## 1 조세제도 합리화

(1)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(조특법 §104의33 신설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□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
	<ul> <li>(직용대상)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</li> <li>80%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"(개인 유사법인)</li> <li>* 특수관계자와 함께 최대지분을 보유한 주주</li> <li>** 사업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외 법인은 시행령에 규정</li> </ul>
	<ul> <li>(과세방식) 초과 유보소득은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과세</li> </ul>
	- 배당 간주금액 = 초과 유보소득(유보소득 - 적정 유보소득) × 지분비율
	○ (적용기준)
	- (유보소득)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+ (과오납환급금 이자 등) - (이월결손금·세금 등)
	<ul> <li>(적정 유보소득) Max{(유보소득 +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 등) × 50%, 자본금 × 10%}</li> </ul>
	○ (간주배당 귀속시기) 각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
	○ (간주배당 지급시기)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
	<ul> <li>(간주배당 소득세 원천장수) 개인 유시법인은 간주배당</li> <li>지급시기에 개인주주에 대해 원천장수</li> </ul>
	○ (중복과세 조정) 향후 배당 간주금액을 주주에게 실제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음

**⟨개점○|♀**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법인의 유보를 통한 소득세 회피 등 방지 <적용시기> '21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위 표에서 설명하는 바를 아래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


17 ... (...) 4



